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 - 161호

2024년 제2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충청지방우정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24년 제2회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급, 총 24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업무내용
우정9급(집배)	- 일 반 : 23명 - 장 애 : 1명	정년 적용	충청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15국)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모집단위별 구분모집표>

(단위 : 명)

구분	모집단위(우체국)	선발인원	구분	모집단위(우체국)	선발인원
일반	대전	1	일반	예산	2
	대전유성	1		부여	2
	대전둔산	2		태안	3
	세종	2		단양	1
	서청주	2		괴산	1
	충주	1		진천	1
	금산	2		음성	1
	홍성	1	장애	세종	1
계	15국 24명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우체국을 기재)**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 균형인사지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18.(일))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우정직 (집배)	자격증	1.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자격 요건 1번 및 2번 모두 충족해야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8.5.(월).) 기준]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등급 이상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경력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1개월 이상의 관련경력
無음주운전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관련분야 정의)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업무

- 단, 아래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
  - 우체국소포원·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
    * 근거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기준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등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6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4 시험 방법

가. (제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시 3% ~ 5%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10% ~ 5% 가점 부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고급(1등급, 2등급) : 5점, 중급(3등급, 4등급) : 4점, 초급(5등급, 6등급) : 3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차등배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10%,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이력서 기타 우대사항란에 가점적용비율 10%,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7.26.(금) ~ 8. 5.(월)	'24. 8. 1.(목) ~ 8. 5.(월)	'24. 8. 9.(금)	'24. 8. 18.(일)	'24. 8. 23.(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SMS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8. 1.(목) ~ 8. 5.(월) 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042-611-1282)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11,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8)를 작성하여 이메일(milkpong@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8. 24. ~ 9. 23.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가 같거나 적(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일평균 7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42-611-12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무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우정직(집배)	우정9급(집배)	총 24명	대전우체국 등 15개 우체국

주요 업무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 지역 우편물 구분·수집·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 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필요 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우편물 배달·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자격증	①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한 자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가산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시 3~5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부여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5. 운전경력증명서 : 필수서류	ㅇ 원본제출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ㅇ 운전면허 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
6.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ㅇ 사본제출 ㅇ 일련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인쇄
7.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필수서류	ㅇ 원본제출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및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ㅇ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구 분	내 용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명	모집단위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당란 체크)
		(　　) 우 체 국	우정9급 (집배)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
2. 이력서	필수	□
3. 자기소개서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원본)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6. 운전면허증 1부(사본)	필수	□
7. 주민등록초본(원본) *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8. 경력(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해당자 한	□
9.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해당자 한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해당자 한	□
1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 한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13.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충청지방우정청 귀하

본인은 충청지방우정청 주관 2024년 제2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자격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자격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우정9급(집배)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우체국 및 농협 등 금융기관) 및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공 란	응시 분야	우정9급 (집배)	응시 자격 요건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명	취득일(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운전면허			

3. 우대요건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자격증명	자격증(등록)번호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4. 가산점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한국사				
	가점비율	보훈번호	등록일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취업지원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 선택
③ 응시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작성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2. 응시자격)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기재 (3. 우대요건)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 별도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3. 우대요건)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한국사 해당자만 작성 (4. 가산점)

- 고급(1등급, 2등급) : 5점, 중급(3등급, 4등급), 초급(5등급, 6등급): 3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차등배점

취업지원 해당자만 작성 (4.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국가보훈부 추천 대상자는 4명 미만에도 적용))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10%,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이력서 기타 우대사항란에 가점적용비율 10%,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지원동기 및 귀하가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4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1.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 분량은 요약서 A4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4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